



## 영국의 2007년 ‘강제결혼에 관한 법’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 I. 개요

영국의 ‘강제결혼에 관한 법’ (Forced Marriage (Civil Action) Act 2007)은 강제로 성립된 결혼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고, 강제결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강제결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그 희생자나 잠재적 희생자를 보호하거나, 그 상황에서 그들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안의 개별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결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강제명령의 유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 법이 강제결혼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공

하는 구제는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가정법원(family court)에서 처리되는 민사구제(civil remedies)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법안은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의 Lord Lester of Herne Hill의 의원입법으로 2006년 11월 16일에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강제결혼의 피해자를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수정했다. 한편 법안의 내용 중 상당수는 정부의 연구그룹(working group)에서 만든 리포트인 “A Choice by Right” (2000)와 정부에서 발행한 2005년에 정부(외무성과 국무성)에서 만든 자문용 자료 “Forced Marriage, A Wrong Not a Right”<sup>1)</sup>과 그에 대한 응답을 담은 자료<sup>2)</sup>, 그리고 법안을 만든 Lester of Herne



- 1)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and Home Office, Force Marriage: A Wrong not a Right (2005) - <http://www.fco.gov.uk/Files/KFile/forcedmarriageconsultation%20doc.pdf>
- 2) Summary of responses to the consultation on the criminalisation of forced marriage - <http://www.fco.gov.uk/Files/KFile/05062006%20Final%20FM%20Report%20NJA.pdf>



Hill경을 지원한 인권단체인 Odysseus Trust<sup>3)</sup>의 자문자료<sup>4)</sup> 등이 그 기초가 되었다. 이후 2006년 11월 16일 상원에서 처음으로 심의가 시작되었고, 하원에서는 2007년 6월 21일에 처음으로 심의를 시작하고 통과되어, 7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여왕의 승인을 얻었다.<sup>5)</sup>

정부에 따르면 강제결혼팀(Forced Marriage Unit)으로 매년 약 300건의 강제결혼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며, 이보다 더 많은 건수가 경찰이나 사회복지, 건강, 교육, 자원봉사 서비스로 보고되고 있으며, 보고되지 않는 것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6)</sup> 작년에만 해도 250건이 넘게 보고된 바 있고 희생자의 일부는 13세에 불과했다. 강제결혼은 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의 다양한 지역 출신들로부터 보고되지만, 대부분은 남아시아 출신으로 약 65%는 파키스탄인의 가족들이었고, 25%는 방글라데시인의 가족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에서 누군가를 강요하여 결혼시킨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며 위협적 행위, 괴롭힘, 폭행, 납치, 강간, 살인 등과 같은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sup>7)</sup> 또한 강제결혼이나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납치를 형사처벌하는 몇몇 국가(파키스탄, 인도, 노르웨이) 등이 있긴 하지만 희생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강제결혼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국 국무성과 외무성은 2005년 1월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와 협력하여 강제결혼에 대한 정부정책을 개발하는 윈스톱숍의 개념으로 강제결혼팀(Force Marriage Unit)<sup>8)</sup>을 만들고, 그 이후 강제결혼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되는 조항(1장)이 있고, 북아일랜드까지 적용되는 조항(2장과 부속서 1)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II. 법의 구조

1장 강제결혼으로부터의 보호: 잉글랜드와 웨일즈
2장 강제결혼으로부터의 보호: 북아일랜드
3장 결과적인 개정사항 등
4장 법의 약칭, 법의 효력의 개시, 법의 범위
부속서1 - 강제결혼으로부터의 보호: 북아일랜드 part 1: 강제결혼 보호명령



3) <http://www.odysseustrust.org/>

4) <http://www.odysseustrust.org/forcedmarriage/consult/consult.pdf>; <http://www.odysseustrust.org/forcedmarriage/consult/fmcsunmary.pdf>

5) 자세한 법 제정 연혁은 Force Marriage (Civil Protection) Act 2007: Explanatory Notes, 15-16쪽 참조.

6) Home Office, No more forced marriages <http://www.homeoffice.gov.uk/about-us/news/forced-marriage-campaign>

7) 강제결혼에 대한 현재의 규제 현황과 강제결혼 형사처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and Home Office, Force Marriage: A Wrong not a Right (2005), 1~4장 참조.

8) <http://www.fco.gov.uk/servlet/Front?pagename=OpenMarket/Xcelerate/ShowPage&c=Page&cid=1094234857863>

part 2: 집행
part 3: 관할과 절차
part 4: 보충사항
부속서2 - 결과적인 개정사항
part 1: 잉글랜드와 웨일즈
part 2: 북아일랜드

(표: 2007년 강제결혼에 관한 법 전체 구성)

‘2007년 강제결혼에 관한 법’ 법은 1996년 가족법(Family Act 1996)<sup>9)</sup>에 대한 개정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의 형태는 가족법 Part 4에 Part 4A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이 법의 대부분은 새롭게 삽입된 “Part 4A: 강제결혼”이 차지하고 있다.<sup>10)</sup> Part 4A는 19개의 장(제63S장부터 제63S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표에서 “1장 강제결혼으로부터의 보호: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그 해당 부분이고, 2,3,4.장은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것과 법개정에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강제결혼에 관한 법은 부수적으로 ‘1981년 대법원에 관한 법’ (Supreme Court Act 1981), ‘1900년 법원과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1998년 북아일랜드 가정과 가정폭력에 관한 명령’ (Family

Homes and Domestic Violence (Northern Ireland) Order 1998), 2003년 ‘북아일랜드 사법 서비스 접근에 관한 명령’ (the Access to Justice (Northern Ireland) Order 2003)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에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발행한 해설서<sup>11)</sup>를 참조할 수 있다.

### Ⅲ. 강제결혼 보호명령

#### 1. 강제결혼 보호명령의 의의

법원은 결혼<sup>12)</sup>을 강요받거나, 결혼을 강요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피해자, 또는 이미 강제결혼을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결혼 보호명령’ (A Forced Marriage Protect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제63B조 제1항).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의 건강, 안전, 안寧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제63B조 제2항). 그 피해자의 안寧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특별히(법원이 피해자의 연령과 이해수준을 고려해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한) 그 사람의 희망



9) 1996년 가족법은 이혼, 가족문제에서 법률구조와 중재, 가정 폭력 등을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총 네 부분(4 parts), 6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제결혼에 관한 법은 이 중 “Part IV: 가정과 가정폭력”과 “part V: 보충” 사이에 Part 4A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10) 영국의 법률개정은 대개 기존의 법률을 새로운 개정법률로 완전히 대체하는 식이 아니라, 기존 법의 개정내용만 담은 법을 새롭게 입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 하나로 인해 기존의 여러 법이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다.

11) Force Marriage (Civil Protection) Act 2007: Explanatory Notes - [http://www.opsi.gov.uk/acts/en2007/ukpgaen\\_20070020\\_en.pdf](http://www.opsi.gov.uk/acts/en2007/ukpgaen_20070020_en.pdf)

12) 여기서 결혼이란 모든 종교적 또는 사회적 결혼식을 의미하며, 그것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는 상관없다(제63S조).



사항과 감정에(그것들이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한) 유의해야 한다(제63A조 제3항). 여기서 '강제결혼'이란 어떤 사람(B)이 다른 어떤 사람(A)을 그 사람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없이 B 또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을 뜻한다(제63B조 제4항). 이 때 B의 결혼 강요 행위가 A를 지향한 것인지, B를 지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향한 것인지는 상관없다(제63A조 제5항). 여기서 강요(force)란 위협(threats) 또는 다른 심리적 수단(psychological means)을 사용한 강제(coerce)를 말한다(제63B조 제6항).

## 2. 강제결혼 보호명령의 내용

법원의 강제결혼 보호명령에는 법원이 명령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 제한, 요구 조치와 그 외에 다른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제63B조 제1항). 그러한 명령의 조건에는 특별히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의 행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의 행위, 강제결혼을 행하거나 시도한 자와 그 외의 다른 경우(예: 강제결혼을 원조하거나, 선동하거나, 상담하거나, 알선하거나 고무한 경우 또는 강제결혼을 공모한 경우)에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피고 그리고, 그 피고 이외에 위와 같은 행위에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과 관련될 수 있다(제63B조 제2항, 제3항).

## 3. 강제결혼 보호명령의 요건

법원이 강제결혼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

우는 명령신청을 받았을 경우이거나, 또는 신청은 없었으나 다음에 언급된 경우이다(제63C조 제1항). 신청없이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다른 가사소송절차(family proceedings)가 진행 중이고, 법원이 강제결혼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강제결혼 보호명령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가 위의 소송에서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경우이다(제63C조 제6항). 여기서 가사소송절차란(1996년 가족법의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고등법원(High Court)의 관할로 되어 있는 소송 또는 가족법 part II(이혼), IV(가정폭력) 조항, 1989년 아동법의 part I, II, IV의 조항 등이 포함되며, 어른과 관련된 고등법원의 관할인 소송, 1989년 아동법 제44조(긴급 보호명령에 관한 소송), 제50조(유괴된 아이를 되찾는 소송) 등도 포함된다(제63C조 제7항). 한편, 명령신청은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이거나 관련된 제3자가 할 수 있다(제63C조 제2항). 여기서 관련된 제3자란 Lord Chancellor의 명령에 의해 특정된 사람을 말한다(제63C조 제7항) 신청은 법원의 허락하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허락을 결정할 때 법원은 신청자와 보호받아야 할 자와의 관계, 보호받을 자의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보호받아야 할 자의(합리적으로 확인가능하고 법원이 그의 나이와 이해를 고려할 때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한) 희망사항과 감정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제63C조 제3항, 제4항).

## IV. 강제결혼 보호명령에 관한 기타 규정들

### 1. 일방적 명령(ex parte orders)

법원은 강제결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고 상황에 맞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방적인(ex parte) 강제결혼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63D조 제1항).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뜻은 명령을 내릴 때, 피고에게 (법원 규칙이 요구하는) 소송 절차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명령이 즉시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보호받을 사람이나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② 명령이 즉시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명령신청자가 신청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고가 소송절차에 대해 알지만 고의적으로 그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지, ③ 대체 수단을 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한 지체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나 명령신청자에게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지(제63D조 제2항). 법원은 강제결혼 보호명령에 관하여 피고가 법적으로 대리(representation)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제63D조 제3항).

### 2. 강제결혼 보호명령을 대신한 약정

법원은 강제결혼 보호명령에 대한 대체수단으

로, 피고의 '약정' (undertakings)<sup>13)</sup>을 수락할 수 있다(제63E조 제1항).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는 체포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제63E조 제2항). 만약 체포가 가능했을 경우라면 명령 대신 약정을 수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제63E조 제3항). 즉 체포가 가능했을 경우라면 강제결혼 보호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약정은 법원이 명령을 내렸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가능하다(제63E조 제4항).

### 3. 강제결혼 보호명령의 유효기간

강제결혼 보호명령은 그 명령이 내려질 때 특정한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만을 유효기간으로 할 수도 있으며, 보호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제63F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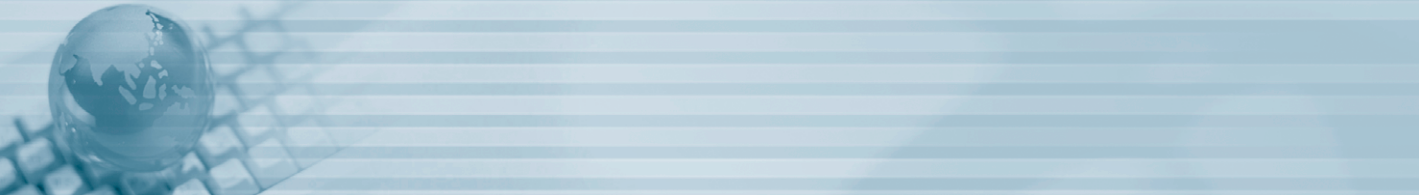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 4. 강제결혼 보호명령의 변동과 취소

법원은 강제결혼 보호명령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 그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자, 그 외에 명령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자 등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결혼 보호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63G조 제1항). 신청이 없이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63G조 제2항).



13) 여기서 약정이란 피고가, 장래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을 법원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 약정은 법원의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약정의 위반은 곧 법원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피고는 구속될 수도 있다.





## V. 명령의 위반에 대한 체포

### 1. 체포 명령 권한의 부여

법원은 제63D조의 일방적 체포(ex parte arrest) 이외의 다른 강제결혼 보호명령을 내릴 때, 피고가 보호받아야 할 자를 향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권한 없이는 적절한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체포 권한을 명령에 부가해야 한다(제63H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일방적 체포명령이 내려지고, 피고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폭력을 당할 위협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 권한이 부과되지 않으면 중대한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체포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제63H조 제3항, 제4항).

### 2. 부여된 권한에 의한 체포

경관(constable)은 어떤 사람이 명령을 어기거나 명령과 관련하여 법원모욕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영장없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제63I조 제2항). 이것은 체포권한이 제63H조의 강제결혼 보호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제63I조 제1항). 위의 규정에 의해 체포된 자는 체포 후 24시간 내에 관련 판사 앞으로 이송되어야 한다(제63I조 제3항).<sup>14)</sup>



14) 이하에서 언급되는 ‘관련 판사’ (the relevant judge)란, 이 법의 1장과 관련한 명령이 고등법원에서 내려질 때 그 판사, 그리고 그 명령이 카운티법원에서 내려질 때는 그 판사나 지방판사(district judge)를 말한다(제63S조).

### 3. 영장에 의한 체포

관련 당사자(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자, 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제3자)는 만약 어떤 사람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명령에 관련하여 법원을 모욕하는 경우, 관련 판사에게 체포영장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제63J조 제2항, 제4항). 이것은 법원이 강제결혼 보호명령을 내렸지만, 제63H조의 체포명령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제63J조 제1항). 그러나 관련 판사는 신청이 선서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체포될 사람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명령에 관해 법원을 모욕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행해서는 안된다(제63J조 제3항).

### 4. 귀환(remand): 일반

강제결혼에 관한 법의 제63I조(영장없이 체포되어 법관에게 이송된 경우) 또는 제63J조(영장 체포)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하여, 만약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관련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제63K조).

### 5. 귀환: 의학적 검사와 보고

위의 조항에 의해 돌려보낼 있는 권한은, 만약 관련 판사가 의학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학검사와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제63L조).

## VI. 관할과 절차

### 1. 법원의 관할

위에서 법원이라고 함은 고등법원(High Court) 또는 카운티 법원(county court)<sup>15)</sup>을 말한다(제63M조). 즉, 이 두 법원에서 강제결혼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카운티 법원까지 관할을 확장한 것은 강제결혼의 피해자나 강제결혼의 위협을 받은 자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보다 용이하게 받게 하기 위함이다.<sup>16)</sup>

### 2. 치안법원으로서의 관할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

Lord Chancellor는 Lord Chief Justice<sup>17)</sup>의 자문을 받아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s)<sup>18)</sup> 이 법의 1장에 해당하는 소송을 다루는 법원으로 편입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63N조).



15) 영국의 고등법원(high court)은 우리의 고등법원과 다르다. 영국의 고등법원은 (치안법원에 대한) 항소법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1심 법원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법원에 대해 항소한 것은 바로 상원(대법원)으로 갈 수 있지만, 카운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 이루어진다. 카운티 법원이란 민사사건을 다루는 하급심 법원으로 카운티(우리의 郡에 해당)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16) Force Marriage (Civil Protection) Act 2007: Explanatory Notes, 8쪽.

17) 원래 Lord Chancellor는 상원 의장, 사법부 수장,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던 책임자였고, Lord Chief Justice는 사법부에서 Lord Chancellor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리였다. 하지만 2005년 헌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에 의해 Lord Chancellor는 상원 의장의 권한은 새로운 상원 의장(Lord Speaker)에게 사법부 수장의 권한은 Lord Chief Justice에게 각각 넘겨 주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 만들어진 법무부(Mistry of Justice) 장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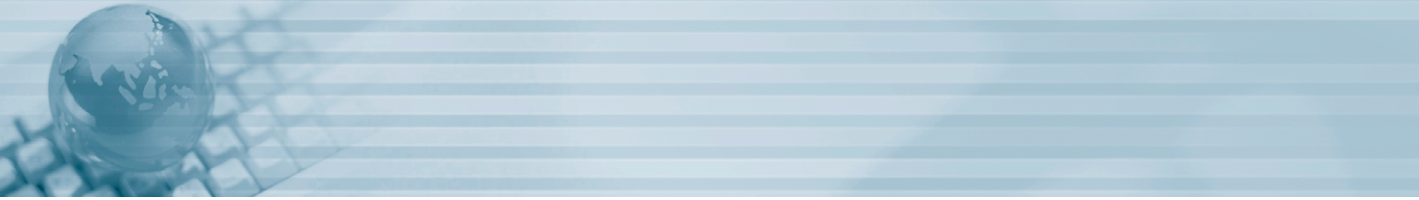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18) 치안법원은 간단한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하급심 법원이다. 직업법관과 일반시민치안판사가 판결을 담당한다.

### 3. 법정 모욕(contempt) 소송

강제결혼 보호명령이나 그러한 명령에 연관된 어떤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정 모욕에 관한 소송은 관련 판사에 의해 수행된다(제63O조).

## VII. 효력규정

이 법의 잉글랜드 관련 부분은 Lord Chancellor의 명령에 의해서 지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웨일즈 관련 부분은 재정인사부가 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3장 <2>). 이 명령은 시행규칙(statutory instrument)에 의해 내려지며, 여기에는 Lord Chancellor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과도기적 규정이나 유보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3장 <2>3.) 반면 북아일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 재정인사부(Department of Finance and Personnel)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 VIII. 기타

정부는 강제결혼에 관련한 일반적 문제나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제63Q조). 이것은 현재 정부의 강제결혼법(Forced Marriage Unit)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지침들이 법적 구속력(statutory power)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sup>19)</sup>

이 법의 2장은 북아일랜드에 관한 부속서 1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이 법의 3장은 Lord Chancellor가 명령에 의해 1장의 목적(과 거기에

서 나오는 결과)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보충적이고 부차적인 또는 거기서 도출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조항인 제2장과 부속서 1에의 목적(과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 재정인사부가 잉글랜드/웨일즈에서의 Lord Chancellor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홍 성 수**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19) Force Marriage (Civil Protection) Act 2007: Explanatory Notes, 9쪽.